



#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외부 안건 관련 보고

2021. 10.

법원행정처

## 1. 검토 배경

### ■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

- 2021. 9. 8. 개최된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‘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’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구성방법과 외부 가능한 안건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TF를 구성하고, 다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음

### ■ 관련 결정사항

-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, 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
-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과 부의 가능한 안건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,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

- 위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에 TF를 구성하여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, 안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

## 2. TF 명단(간사, 서기 포함)

### ■ 구성 방법

-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TF의 팀장이 되고, 법원행정처 내 부장판사 심의관 등을 팀원으로 하여 TF를



## 구성함

- 간사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예상 안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법정책심의관과 인사담당관이 담당함

### ■ TF 명단(간사, 서기 포함)

	성명	비고
TF 팀원	이창열 기획총괄심의관	
	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	
	박정호 사법등기국장	
	유아람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	
	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	팀장
간사 1	유제민 사법정책심의관	
간사 2	강정현 인사담당관	
서기	노순범 사무관(사법정책심의관실)	

## 3. TF 논의 주제

-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TF는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 및 회부 안건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아 연구 및 검토를 실시함

### ■ 구체적인 논의 주제

-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안
  - 분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
  - 분과위원회의 적정 규모
  -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방안(추천 방식 등 포함)
-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관련 부의 안건
  -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부의 및 회부 안건 검토



## 4. 논의 결과

### 가.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규모

#### ■ 상설 분과위원회

-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연구·검토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중요 안건이 다수 존재함
- 분과위원회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필요한 추진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·논의하고, 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,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및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시적인 단위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한 개 또는 소수의 중요 안건을 정해진 기간(보통 1년) 안에 연구·검토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 다음 활동을 종료하는 특별 분과위원회(ex,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,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)보다는 상설 분과위원회가 더 적합함

#### ■ 규모

##### ● 관련 규정

- 「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」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
- [참고]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

**제8조 ③**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, (후략)

##### ● 기존 상설 분과위원회의 규모

-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른 상설 분과위원회의 규모를 참고로 할 수 있는바 각 상설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아래와 같음
- [참고] 현재 상설 분과위원회 규모



- 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: 14인
- 재판제도 분과위원회: 11인
- 사법정책 분과위원회: 11인

#### ● 추가 고려 사항 - 소위원회 구성 가능성

- 다수의 중요한 안건이 병행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종전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 경험을 고려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·검토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원활한 연구·검토를 위하여 최소 일정 규모(최소 5인) 이상의 위원 구성이 필요함

#### ● 소결

- 기존 상설 분과위원회의 규모, 소위원회 구성 가능성,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추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**11인에서 13인 사이의 구성**을 고려함이 상당함

### 나. 분과위원회 위원 등 구성 방안

#### ■ 임명·위촉권자

-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의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**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**
- [참고]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

**제8조 ③**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

#### ■ 구성

#### ● 기본 방향

- 위원은 **법관과 외부 전문가**로 구성하되, **위원장은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법조 일원화제도 논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량감 있고 사회적 신망을 받는 외부 인사**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
- 사회 각계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, 법관 중심의 위원회



구성을 지양하고 각계의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

- 추후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

● 구성 방안 ⇨ 추천을 통한 위촉 방식과 직접 위촉 방식을 혼합

- 추천을 통한 위촉(8인)

- 법관(2): 전국법원장회의,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각 1인을 추천
- 외부 위원(6)
  - 법무부, 대한변호사협회, 한국법학교수회,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는 안전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각 1인을 추천받아 위촉함
  - 입법부,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도 각 1인을 추천받거나, 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

- 직접 위촉(2인 내지 4인)

- 법조일원화와 법원의 개혁 방향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외부 인사 또는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

## 5.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안건

### ▣ 안건 부의 및 회부에 관한 규정

- 안건 **부의** 권한: 의장(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안건)
- 분과위원회에의 안건 **회부** 권한: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
- 부의 안건 관련 건의: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의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·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의장에게 건의 가능



## ● [참고] 관련 규정

### <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>

#### 제6조(회의의 안건과 의결)

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,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.

#### 제8조(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

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·검토한다. 다만,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·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.

#### 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 등)

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·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## ▣ 회부 필요성이 있는 안건의 내용

- 법조일원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안건으로  
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음

-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
-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환경
-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(재판연구원 등)의 확보
-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

- 각 안건별 세부 논의 사항 예시

- 안건별 세부 논의사항은 추후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

### 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

- 법조일원화 시대의 바람직한 법관상
- 현행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방식과 절차에 대한 평가
-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방식과 절차 개선 등

### 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

-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는 법관의 정년



-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조건(급여 / 연금 / 기타 여건)

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(재판연구원 등)의 확보

- 적정 재판연구원의 수
- 재판연구원 선발 방식과 임기

■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

-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법정심리 모델(집중심리, 실질적 증거조사)
-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재판서 작성 방식 등

## ■ 안건 회부 방안

### ● 방안

#### - ① 순차 회부 방안

⇒ 위 각 안건 중 연구·검토의 시급성에 따라 일부 안건을 먼저 회부하고 그에 대한 연구·검토가 마무리된 후에 다음 안건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

- 시급한 안건에 대한 연구·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·검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
- 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연구·검토의 순서나 방식을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.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부의한 안건을 연구·검토하도록 한 현행 규정상 안건 회부 자체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최초로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결정하고, 그 후의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함

#### - ② 일괄 회부 방안

⇒ 최초 위원회 구성 시에 위 각 안건을 일괄하여 회부하는 방안

- 분과위원회가 연구·검토의 순서나 방식(우선 순위 선정, 복수 안건의 통합 검토 등)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나, 일괄하여 회부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연구·검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



## ● TF 검토 의견

- 각 안건이 각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연구·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, 종래에도 분과위원회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·검토가 임기 내에 가능한 정도의 안건을 회부하여 온 점, 추후 안건 추가 회부 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급성이 있는 일부 안건을 먼저 회부하고 그에 대한 연구·검토가 마무리된 후에 다음 안건을 추가로 회부하는 1안이 더 적절하다고 보임

## 6. 향후 계획(안)

- 2021. 10. 13.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보고
- 2021. 10. ~ 11. 위원 추천 의뢰 등 위원 구성
- 2021. 12. 위원 임명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<끝>